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596
----------	-------

발의연월일 : 2026. 4. 24.

발 의 자 : 백선희 · 박희승 · 이수진
남인순 · 황운하 · 정준호
김준형 · 한창민 · 서왕진
손명수 · 신장식 · 이해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또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 존중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및 청년친화도시의 경우 관련 법률에 그 개념과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아동친화도시의 경우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

조약2 신설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아동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고 아동의 권리보장, 복지증진,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아동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아동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아동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취소,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군·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 ⑤ (생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